

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의안 번호	2018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8. 07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요구이유

거창군장애인장 민간위탁 포기(2018.2.26.)로 인해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 :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

나.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

다. 시설규모

구분	부지	건물			정원		비고
		계	공장	창고	종사자	근로자	
현황	6,612㎡	2,201㎡	1,200㎡	1,001㎡	7명	30명	

라. 사업내용 :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

마. 위탁대상 사무

○ 운영

-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서비스 제공
-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

○ 시설물 관리 : 장애인근로사업장 건축물, 기계설비, 차량, 물품 등

바.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사. 선정방법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수탁자선정위원회)에서 심의·결정

아. 소요예산

○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

- 장애인복지법 제79조(비용 부담)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
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·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-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회 마련
-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나. 관계법령

- 시설의 종류 및 기능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3호
 -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
- 설치 및 운영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 -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
- 운영신고 서류 및 위탁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」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다.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: 2018. 7월 임시회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: 2018. 8월
 - 공개모집/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(9명 이하)
-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8. 9월
-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: 위·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

라. 예산조치

- 2018년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1차 추가경정 예산 반영

마.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계획

❖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

I 추진배경

- 장애인근로사업장 현 위탁법인의 수탁포기 : 2018. 2. 26.
- 현 법인과 위·수탁 협약 해지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법인 모집 공고 등 절차 추진

II 현 황

-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
- 위탁법인 : (사)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(지회장 백승모)
- 운영기간 : 2016. 7. 14. ~ 2019. 6. 30.
 - 위탁포기 : 2018. 2. 26
- 생 산 품 : 종이포장재 일체(※ 거창^한거창 브랜드 포장박스 생산)
- 시설현황

부지	건 물			종사자현황		비고
	계	공장	창고	종사자	근로자	
6,612㎡	2,201㎡	1,200㎡	1,001㎡	2명	7명	

※ 2012. 06. 27 부지매입 / 2013.05. 31 공장 준공

○ 운영현황

구 분	수 주 실 적				
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매출액	5.5억원	9억원	12억원 9천	9억원	11.6억원
주력 생산품 (과수)	▷사과 : 3억 ▷포도 : 5천 ▷딸기 : 5천 ▷기타 : 1억5천	▷사과 : 3억5천 ▷포도 : 5천 ▷딸기 : 1억5천 ▷기타 : 3억5천	▷사과 : 4억5천 ▷포도 : 2억5천 ▷딸기 : 2억 ▷기타 : 3억 9천	▷사과 : 4억5천 ▷포도 : 2억 ▷딸기 : 2억 ▷기타 : 5천	▷사과 : 5억5천 ▷포도 : 2억 ▷딸기 : 2억 ▷기타 : 2억1천

※ 2013.07. 24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장

Ⅲ 추진계획

가. 운영법인 및 기간

- 운영방법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
 - 「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5조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 - 「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6조

나. 추진일정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: 2018. 7월(제233회 임시회)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: 2018. 8월
 - 공개모집/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(9명 이하)
-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8. 9월
-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
Ⅳ 기대효과

-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장애인의 자립능력배양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, 일자리 창출

□ [참고자료] : 설치 및 운영, 위탁 등 관계법령

가 시설의 종류 및 기능

□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나 설치 및 운영

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

제5조(위탁운영)

-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)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공개모집하며, 수탁자선정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.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-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2013.6.12)
-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6.12)

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

-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.
 1. 군 소속 공무원(개정2014.5.28)
 2. 대학교수,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개정2014.5.28)
-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,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-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8. 1. 14 개정 2013.6.12)

라 운영신고 등

□ 장애인복지사업안내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

설치·운영시 구비서류

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
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
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

4.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

5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)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